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41호 2015. 12. 31.(목)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52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	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53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54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1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55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5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	2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59호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	-----	2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60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3

⇒ 뒷면 계속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61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3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62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39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	44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83호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9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9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5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9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55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주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1/3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담당을 서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
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52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 ② "생활임금액"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 ③ "최저임금"이라 함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④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⑤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구 소속 근로자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구로부터 그 사무 및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 및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

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제6조(생활임금 사전고지 등) 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53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써 소·돼지·말·닭·젓소, 로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제한지역의 변경 및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의 가축사육 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2항 중 “법 제26조제4항”을 “법 제26조제5항”으로 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제7조 중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법령”으로 한다.

제8조 중 “제53조의 규정”을 “제53조”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4조제2항 관련)

단위	규 모 별	계	수집·운반 수 수 료	공공처리시설 사 용 료
1ℓ 당	허가대상시설	10원	7원	3원
	신고대상시설	9원	7원	2원
	신고대상시설미만 시설	8원	7원	1원

주) 규모의 구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따른다.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운영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따른다.

제8조(생상품의 우선구매) 구청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55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대통령령”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전부”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 중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등(제8조 관련)

1. 시설사용료(서구 청소년수련관에 한한다)

(단위 : 원)

시 설 명	구분	오전 (08:00-12:00)	오후 (12:00-18:00)	야간 (18:00-22:00)	비 고
공 연 장	공연(영화)	30,000	45,000	70,000	
	행 사	45,000	65,000	90,000	
강의실 등	교 육	20,000	30,000	40,000	1실 기준

【 비 고 】

1.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2. 시설사용 허가 시 사용자가 사용시간(오전, 오후, 야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한다.
3.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2시간 이상 초과 사용했을 경우, 그 초과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면 다음회 사용료의 50%,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면 다음 회 사용료의 30%, 30분 미만이면 다음회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또한 22시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15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4.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2. 부속설비 사용료(서구 청소년수련관에 한한다)

(단위 : 원)

부속설비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피 아 노			1회 공연	30,000	
무대시설	공 바 톤		1회 1개	10,000	
무대음향	마이크		기본 3개 추가 1개당	10,000 3,000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특수마이크	PIN	1일 1개	30,000	
		W/L	1일 1개	20,000	
	M R (A R , B G M)		1시간	10,000	
	L C D 프 로 젝 트		1회 공연	20,000	
무대조명	조 명		1시간	20,000	○ 조명연출을 필요로 하는 조명에 대해서만 조명료를 징수함.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특수효과기	포그머신 (액별도)	1회 공연 1대	20,000	
		드라이아이스 (액별도)	1회 공연 1대	10,000	
냉난방	○ 계절에 따른 봄·가을철, 여름철, 겨울철로 구분하여 시설별 시간 당 냉난방기 소비전력, 한 국전력 전기요금표 등에 10%가산한 범위에서 산출한 사용료를 계산함.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냉방 : 6월~8월, 난방 : 11월~3월 ※ 기온급변 시 사용자와 협의조정 가능함.				
대소도구	○ 1회 사용료 : 단위 당 취득가액이 100,000원 이상인 것에 한하여 취득가액에서 매년 감가상각(5%)비를 감한 자산가액의 5%를 기준 사용료로 계산함.				

【 비 고 】

1. 피아노, 무대시설, 무대음향, 무대조명 중 공연(행사)연습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3. 수영장 사용료(서구 청소년수련관에 한한다)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성 인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이하	
강습회원 (월 이용)	개 인	52,000	44,000	38,000	
	단 체	43,000	33,000	30,000	
자유회원 (월 이용)	개 인	42,000	33,000	28,000	
	단 체	36,000	24,000	20,000	
1일 이용	개 인	5,000	3,000	2,000	
	단 체	4,000	2,500	1,500	

【 비 고 】

1.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20명 이상이고, 인솔자에 따라 인솔되며,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강습회원(월 이용)이란 수영프로그램을 1개월 단위로 수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유회원(월 이용)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고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 사용료 월5,000원, 열쇠분실 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 재발급 수수료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4. 수강료 : 1시간 기준 4,000원 범위(단,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5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때
3. 체육센터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 중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한다.

제22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2]

서구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제11조 관련)

1. 수영장사용료

(단위:원)

구 분		사용료	비 고
어린이(초등학생이하)		2,000	○ 단체라 함은 동일 목적으로 20인 이상 이고, 인솔자에 의해 인솔되며 동시에 사용하는 자를 말함. ○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주3회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청소년(중·고생)		3,000	
성 인		5,000	
단 체	어린이	1,500	
	청소년	2,500	
	성 인	4,000	
월 회 원	어린이	28,000	
	청소년	33,000	
	성 인	42,000	
강습회원	어린이	38,000	
	청소년	44,000	
	성 인	52,000	

2. 체력단련실

(단위:원)

구 분		사용료	비 고
청소년		1,000	○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샤워장 사용료 포함.
성 인		2,000	
월회원	청소년	25,000	
	성 인	35,000	

3. 체육관 사용료

(단위:원)

구 분	사용료	비 고
어린이(초등생이하)	700	○ 사용료는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1회 대관은 별표1의 조기,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하며,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청소년(중·고생)	1,200	
성 인	1,500	
체육관 대관	80,000	

4. 교육 수강료

가. 문화프로그램

(단위:원)

구 분	수강료	비 고
문화프로그램	20,000	○ 재료비는 별도 본인 부담 ○ 1주 2회 이상(1회1시간) ○ 4주를 1개월로 봄 ○ 1개월, 1명 기준

나. 체육프로그램

(단위:원)

구 분	수강료	비 고
탁구,우슈	30,000	○ 주5회(월~금) 운영의 1개월 강습 (1일1회 1시간 기준, 단 배드민턴은 1일 1회 2시간 기준)
검도,태권도		
농구,기타		
배드민턴	33,000	○ 샤워장 사용료 포함
에어로빅	33,000	

-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사용료 월5,000원 범위내, 열쇠분실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재발급수수료 1,000원의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
 - 1)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 2)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특성상 수강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조정가능
 - 3) 2종목 이상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 4) 3개월이상 장기 이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 5)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 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45조의9 규정”을 “제45조의9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다음 각 호의”를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구청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재해업무 담당을 간사로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와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등을 처리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계규정”을 “관계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5일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4항 중 “제3항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를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시행하기 위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살에 대한 인천광역시 서구 차원의 책무와 예방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의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

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3.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내 기관·단체 및 사업주 등은 자살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이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 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지원 등)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59호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 전담부서에 평생교육 관련 사업이 상호연계 및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의·조정·중재 등 총괄 책무를 수행한다.
-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단체의 사업지원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우수·거점·특화·국비사업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성인문해·장애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5.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6.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축제·행사 등
7. 평생학습동아리·강사·자원활동가 등 육성 및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활동을 지도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인적자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설치)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심의하고 평생교육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 기관(시설, 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서구평생교육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의장은 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의원 2명을 포함한다.

③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는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회의) ① 협의회는 회의는 의장이 소집·주재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기관(시설, 단체)간의 프로그램의 연계와 우수 프로그램 육성
2. 평생교육기관(시설, 단체)간의 정보 교류와 업무 조정
3. 법 제16조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

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단체 등의 실무자와 교육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4조(실무위원회의 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제척, 기피, 회피)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보상 등)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균등하고 질 높은 기회 제공을 위하여 구에는 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동에는 “동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연구 및 홍보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4.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5.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관리·운영
6. 평생교육 관계자, 강사, 동아리에 대한 연수 및 교육
7. 학습동아리 조직과 지원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
9.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및 문자해독 교육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종사자·동아리 관리
3. 평생학습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 상담 등

제20조(평생학습관 등의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 사업과 관련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교육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2. 일정한 재정능력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지정 요건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학습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직원을 둔다.

제21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학습관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수강료”라 한다)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의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2조(수강료 반환)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수강료가 과오납 된 경우
2. 수강신청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강사나 강의장소 등의 원인으로 수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4.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2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

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평생교육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 하여야 하며, 2년간 평생교육진흥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25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제26조(실비지급)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다른 조례의 준용)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경비보조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60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육성대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장이 인가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이어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진흥기금”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진흥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를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5조제3항 중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잉여금등은”을 “범위에서 지출하되 잉여금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국채·공채·기타”를 “국채·공채·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육성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육성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자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위촉한자로”를 “위촉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 및 감사 2인 위원중”을 “1명 및 감사 2명은 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간사 1명과 서기 1명”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8조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3분의 1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분의 2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년도”을 “해당연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회현금관리 재규정”을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세출회현금관리의 여러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회이상”을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 불구하고”를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기금의 결산) 기금의 결산 및 보고는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중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를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로 한다.

제1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61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관할아래”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관할 아래”로,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로 한다.

제3조 중 “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6조 중 “대학운영”을 “문화대학 운영”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학”을 “문화대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대학운영”을 “문화대학 운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5내지 9인으로”를 “5명 이상 9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서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부장”을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구의회 의원”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학생대표”를 “학생대표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중 “개회”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강사의 위촉은 학장이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수강생의 정원대비 현원의 비율이 60퍼센트 미만으로서 강좌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의 강사
2. 결강, 지각, 강좌진행의 불성실 등으로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제10조제3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1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강료 반환)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액 반환

2. 강좌의 신청인원이 교육인원에 미달되어 강좌가 폐강되는 경우 전액 반환
3. 강좌 신청자가 본인 사유로 개시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고, 개시 후 요청할 경우에는 취소 일까지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5조 중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인·법인·단체등에게”를 “전문성을 위하여 개인·법인·단체 등에게”로 한다.

제1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62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에 관하여”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의 대관 및 사용에”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및 기타”를 “및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관의 시설 및 설비중”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으로,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관내”를 “회관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또는 제4호에 따른”으로, “년간 2회이상”을 “연간 2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2회이상 회관사용”을 “2회 이상 회관 사용의”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사항에”를 “각 호의 사용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30%범위안”을 “30퍼센트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00명이상 일시 이용시”를 “100명 이상 일시 이용 시”로, “40%범위안”을 “40퍼센트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50% 범위안”을 “50퍼센트 범위”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천재지변 기타”를 “천재지변,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입장권 구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공연일 하루 전 17:00까지 예매처 방문 및 유선 상으로 환불 요구 시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시간중”을

“사용 시간 중 ”으로, “그사용료”를 “그 사용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시간이상 초과사용시”를 “2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시간이상 2시간미만 사용시”를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사용 시”로, “50%”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0분이상 1시간미만”을 “30분 이상 1시간 미만”으로, “30%”를 “3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30분 미만 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20퍼센트

제11조제3항 본문 중 “없는한 허가일로부터”를 각각 “없는 한 허가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간내에”를 “기간 내에”로,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내”를 “한 번만 10일의 범위”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는 제11조제3항에 따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의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천광역시서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이용 시”를 “이용 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50%를 반환할 수 있다.”를 “50퍼센트를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천재지변 기타”를 “천재지변,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사정으로 인하여”를 “사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0일전에”를 “30일 전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5일전에”를 “15일 전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간중에”를 “기간 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사용기간중에”를 “사용기간 중에”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의없이”를 “동의 없이”로, “재대여”를 재대여(再貸與)“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예매수수료는 판매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구청장과 사용자가 협의 결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회수시”를 “회수 시”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만취자”를 “만취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휴대한 자”를 “휴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 중 “각종행사”를 “각종 행사”로, “회관내에”를 “회관 내에”로 한다.

제20조 제명 “문화회관”을 “회관”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회관”을 “회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가입일로부터”를 “가입일부터”로, “1년후”를 “1년 후”로, “1회에

한하여 연회비의 10%”를 “한 번만 연회비의 10퍼센트”로 한다.

제20조의1제2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문화교양센터 수강료는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 제명 중 “문화회관”을 “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대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1조를 따른다.

제21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를 받은자는”를 “제1항에 따라 일부를 임차하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23조를 제22조로, “문화회관”을 “회관”으로 하고, 제24조를 제23조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중전의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1-1호서식)

반 납 고 지 서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년도	회계
고지번호	20××-××××××××-×× ×××××	
(조직)		
(정책)	(단위)	
(세 부)	(통계목)	
(편성목)		
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랍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인		
지출금 반납 입금계좌		
×××은행	××××-××-×××××× ×××	
(반납자)	귀하	

	년도	회계
고지번호	20××-××××××××-×× ×××××	
(조직)		
(정책)	(단위)	
(세 부)	(통계목)	
(편성목)		
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반납자) 성명		
지출금 반납 입금계좌		
×××은행	××××-××-×××××× ×××	
지출원 귀하		

	년도	회계
고지번호	20××-××××××××-××× ××××	
(조직)		
(정책)	(단위)	
(세 부)	(통계목)	
(편성목)		
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지출금 반납 입금계좌		
×××은행	××××-××-×××××× ×××	
(반납자)	귀하	

<작성요령> 붉은색 글씨로 기재

(별지 제59호서식)

자금운용기록부

연월일	적요	기관명	지					환					잔액	비고
			정기 예금	<u>MMDA</u>	기타 예금	차입 또는 대여	계 (1)	정기 예금	<u>MMDA</u>	기타 예금	차입 또는 대여	계 (2)		

<기재요령> 비고란에는 환입여부를 표시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83호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2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으로, "각호의 서식에 의하되"를 "각 호의 서식에 따르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보건의료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을 "구 보건의료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수탁신청서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		
위탁받고자 하는 업 무			
<p>「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수탁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 - 19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검단로250번길 6-2외 2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2. 31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12-3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810-4, 810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250번길 6-2 (오류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810-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250번길 6-6 (오류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810-2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250번길 6-7 (오류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8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250번길 6-9 (오류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68-15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63번안길 26 (불로동)	2008-12-31	검단로763번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68-1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63번안길 26-1 (불로동)	2008-12-31	검단로763번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19-2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20번길 5 (검암동)	2009-09-22	검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38-5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2번길 49 (검암동)	2009-09-22	검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2-63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 12 (석남동)	2009-07-10	옛 고려 총렬왕때 부천과 부평 고을의 이름 반영	
1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2-66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 12-9 (석남동)	2009-07-10	옛 고려 총렬왕때 부천과 부평 고을의 이름 반영	
1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2-69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 28 (석남동)	2009-07-10	옛 고려 총렬왕때 부천과 부평 고을의 이름 반영	
1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2-70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 32 (석남동)	2009-07-10	옛 고려 총렬왕때 부천과 부평 고을의 이름 반영	
13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2-17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 6 (석남동)	2009-07-10	옛 고려 총렬왕때 부천과 부평 고을의 이름 반영	
14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69-4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224번길 7 (검암동)	2009-09-22	도요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366-11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 172-3 (마전동)	2008-12-31	마전이라는 법정동 명칭을 이용하여 명명	
16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116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151-75 (백석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1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4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501번길 58-23 (원창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28-1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안길 19-4 (금곡동)	2009-09-22	봉화로223번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42-59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45번길 20 (석남동)	2015-11-13	북향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20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617-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908-142 (불로동)	2009-09-22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2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7-1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118 (석남동, 씨엠팰리스)	2009-09-22	도로구간 내의 신현동과 석남동의 머릿글자를 따 명명	
2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7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112번길 1 (석남동, 해드림2차)	2009-09-22	신석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893-6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88번4길 27 (마전동)	2008-12-31	완정로188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네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24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893-7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88번4길 27-1 (마전동)	2008-12-31	완정로188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네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2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6-7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39번안길 14-6 (원당동)	2008-12-31	원당대로839번의 안쪽으로 분기되어있는 도로	
26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99-6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10-16 (연희동, 청라 마르세엘)	2011-06-30	중봉대로 시작점부터 약6120m 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로 주민의견 반영	
2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9-1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319번길 3-14 (경서동)	2012-03-30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3,1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19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5. 12.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신석로 118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석남동 497-1	신석로 118	2015.12.24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